

대우큐스탁론 계좌운용규칙

2018.07.01

1.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 규칙

매매시간		07:30 ~ 16:00 (장전시간외, 정규시장, 장후시간외, 매수·매도 가능) 16:00 ~ 18:00 (시간외 단일가 매매 불가), 예약매매 불가 ※ 반대매매 실행일(로스컷 실행일) : 장전시간외 종가 매도만 가능
금융 거래 시간	대출(입금)	08:00 ~ 16:00 까지 (대출가능시간/증권사 영업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)
	이자(출금)	09:00 ~ 16:00 까지 (전액출금방식 : 이자출금액 부족시 미인출)
	부분상환/중도해지(출금)	08:00 ~ 16:00 까지
	만기상환(해지)(출금)	15:30 부터 (부분출금 가능)
	로스컷(출금)	15:30 부터 (부분출금 가능)
거래가능종목		- 가능종목 : KOSPI,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 및 ETF종목 (일부종목 거래불가) - 불가종목 : 제3시장(KONEX)상장주식, 투·용자회사, 수익증권, 신주인수권, 채권, ELW, ETN 등 가능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
거래유형		100% 현금거래에 한함. (※ 신용거래/공매도/미수거래 불가)

매매거래금지종목	매수	보유	보유금지(반대매매)시점	비고
① 관리종목	불가	불가	편입 후 재거래 즉시	
② 거래정지예정종목	불가	불가	거래정지 전일	
③ 권리락종목 (배당락 제외)	불가	불가	권리락 전일(기준일2일전)	
④ 감자·합병·액면분할·병합종목 등	불가	불가	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전일)	
⑤ 투자경고(위험)·단기과열 종목	불가	-		▶일별 조회
⑥ 액면가 100%이하 종목	불가	-		▶ 전일 기준
⑦ 시가총액 100억미만 종목	불가	-		▶ 전일 기준
⑧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거래종목	불가	-		▶ 일별 조회
⑨ 신규 상장종목(기업공개)	불가	-		▶ 상장일에 한함
⑩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%이상 종목	불가	-		▶ 일별 조회
⑪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	불가	-		▶이유없는 시세급변 만 해당
⑫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	불가	-		
⑬ 5일 평균거래량 1천주미만 종목	불가	-		▶KOSPI200, KRX100 제외
⑭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재전 예납 조치를 취한 종목	불가			▶일별 조회
⑮ 권리발생 예정종목	불가		반대매매 예정일의 5일전	
⑯ 금융사 지정종목	불가	-		▶지정후 즉시

(RMS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)				
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	불가			▶2.자동반대매매규칙의 "매수거래정지"참조

- 대출신청 전에, 보유불가종목 기보유시, 보유불가종목 매도 후 대출신청 가능
- 대출실행 후 주식입고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내 대체 입고만 가능. 타 증권사 입고 및 주식출고는 불가
- ☞ 주식 입고시 매수불가종목, 보유불가종목, 현물은 입고 불가, 로스컷 실행 후 입고 불가.
- ☞ 입고주식이 보유불가종목에 해당될 경우 해당종목에 대해 자동반대매매가 실행되므로 입고 전에 HTS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보유불가종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대출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일반종목이 아닌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,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은 매매 불가함.
- 포트폴리오 제한 : 동일종목당 최대 투자비율은 계좌평가금액의 최대 50% 이내로 제한
- 동일종목 매수제한 : 특정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상품 이용 전체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량을 해당종목 총상장주식의 3%이하로 제한
- 유동성 제한 :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%이상 매수금지
- 금융사지정(시스템제한) 매수불가종목 : 대우큐스탁론 시스템(RMS)에서 고객투자 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선정한 종목
- 대출계좌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.
-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(5원 1원)로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.
-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함.

* RMS(Risk Management System)란, (주)쌍크폴로부터 제공받는 위험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

2. 자동반대매매 규칙

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	자동반대매매 시기
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120%이하 도달후 익일 오전 08시 30분까지 담보비율이 120%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☞ 장 마감 이후 이자출금 등의 사유로 담보비율이 120%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▶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
② 관리종목	▶ 관리종목으로 편입 후 재거래 즉시
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지정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▶ 권리락 전일(기준일 2일전) 오전 동시호가 부터
④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 종목	▶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 부터
⑤ 주식병합/주식분할 감자,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▶ 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 전일) 오전 동시호가부터
⑥ 대출해지 사유(만기경과 / 기한이익상실) 발생 후,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	▶ 대출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11영업일 오전 동시호가
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	▶정리매매 시작일

증권계좌 담보비율	■ 증권계좌 담보비율 = (장중 실시간) 계좌담보평가액 ÷ 대출원금 ① 계좌담보평가액 = 주식잔고평가금액(장중 실시간 보유주식수 × 현재가) + 예수금 ② 예수금 : D+2일 예수금 (대출원금 발생시, 예수금에 포함됨) ☞ 대출신청 전에 매수금지종목을 기보유한 경우, 최초 대출시점의 담보평가액에서 제외 ☞ 대출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일반종목이 아닌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,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은 담보계좌평가에서 제외됨.						
현금인출	■ 담보비율 135% 초과분에 한하여 고객 현금인출 가능 단, 아래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고객 현금인출이 추가로 제한됨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현금인출이 제한되는 경우</th><th>현금인출 가능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전체주식 보유 비중이 70% 초과할 경우</td><td>▶ 해당주식을 일부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 범위내에서 현금인출 가능 (담보비율 135% 초과분에 한함)</td></tr> <tr> <td>②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한 종목주식 보유비중이 60% 초과할 경우</td><td>▶ 해당주식을 전체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에 관계없이 담보비율 135% 초과분에 한해 현금인출 가능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※ 현금인출을 위한 담보율 계산시 매수불가종목, 보유불가종목 및 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은 계좌평가에서 제외됨.	현금인출이 제한되는 경우	현금인출 가능액	①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전체주식 보유 비중이 70% 초과할 경우	▶ 해당주식을 일부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 범위내에서 현금인출 가능 (담보비율 135% 초과분에 한함)	②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한 종목주식 보유비중이 60% 초과할 경우	▶ 해당주식을 전체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에 관계없이 담보비율 135% 초과분에 한해 현금인출 가능
현금인출이 제한되는 경우	현금인출 가능액						
①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전체주식 보유 비중이 70% 초과할 경우	▶ 해당주식을 일부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 범위내에서 현금인출 가능 (담보비율 135% 초과분에 한함)						
② 최초 담보제공 예탁자산 중 한 종목주식 보유비중이 60% 초과할 경우	▶ 해당주식을 전체 매도(현금화)한 경우, 매도금액에 관계없이 담보비율 135% 초과분에 한해 현금인출 가능						
로스컷 (반대매매)	■ 로스컷(반대매매)이 발생하는 경우 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0%이하 도달 후 익일 오전 08시 30분까지 120%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☞ 오전 동시호가로 대출원리금 상환금액 수량만큼 로스컷(반대매매) 실행 ☞ 종가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0%초과 하더라도 장 마감 이후 이자출금 등의 사유로 담보비율이 120%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로스컷(반대매매)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② 대출 해지사유(만기경과/기한이익상실) 발생 후,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☞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1영업일 오전 동시호가로 자동반대매매 실행 ■ 로스컷(반대매매) 순서 : 반대매매 수량은 반대매매 실행일 하한가 기준으로 계산됨. ① 보유금지종목, 매수금지종목 ② 시가총액 상위종목(전일 기준) 단, 로스컷 실행 후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(하한가종목 또는 거래정지종목), 원금상환 부족분만큼 다음종목 반대매매 실행(5분간격 재실행) ■ 로스컷(반대매매)후 출금 : 원금/이자 일괄청구방식, 부분출금 가능 ■ 로스컷(반대매매)이 실행된 계좌는 계약해지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,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계좌에 주식(현물)이 입고되는 경우,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 로스컷이 실행되므로 로스컷 이후에는 주식(현물)입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■ 로스컷(반대매매) 경고 휴대폰 안내문자(SMS) 발송 ① 실시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+ 3%(123%), 로스컷비율 + 5%(125%) 도달시 ② 당일 18시 00분 : 담보비율이 120% 이하인 고객 전체 ③ 로스컷 실행일 07시 30분 : 로스컷 대상고객 전체 ④ 로스컷 실행 즉시 단, 장중 경고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SMS 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■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고객은 이자연체, 만기연장, 반대매매(로스컷 반대매매 및 보유불가종목 반대매매 등)등의 중요한 휴대폰 안내문자(SMS) 수신을 위하여 반드시 당행에 휴대폰번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휴대폰 번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 안내문자(SMS) 수신에 불가하여						

	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행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대출해지 유예기간	■로스컷(반대매매) 이후, "대출해지 유예기간제도" 적용 ①로스컷 실행 후, 영업일 기준 5일 이내(15:30까지) 현금입금 또는 일부상환으로 담보비율 122% 초과시 재거래 가능(현물제외) ② 5영업일 경과시, 대출해지 및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조치함. (5영업일 15:30까지 입금가능) ③ 대출 해지사유(만기경과/기한이익상실) 발생시에는 미적용함. ④ 휴대폰 안내문자(SMS) 발송(증권위험관리시스템) : "유예기간내 입금요청 / 대출해지 경고 SMS" ■"대출해지 유예기간" 중 고객이 직접 대출금 상환 가능 (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포털 홈페이지 이용)
매수거래 정지	■ 주식매수가 정지되는 경우 ① 장중 담보비율이 120%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☞ 담보비율이 120%초과시 매수가능 ② 로스컷(반대매매)실행 후 담보비율이 122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☞ 현금 입금, 일부상환, 추가변동 등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122% 초과시 매수가능 ③ 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을 보유시 ☞ 상장폐지 실질심사사유 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 거래 정지조치종목을 보유한 경우, 해당종목을 제외한 담보평가금액이 로스컷 비율(120%)이하로 하락시에 주식 매수가 제한됩니다. ☞ 주식매수거래를 하고자 하실 경우, 추가 입금하여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(120%)을 초과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3. 대출약정 및 대우큐스탁론 서비스약정 체결규칙

신규약정 체결 (재약정 포함)	■대출약정 체결조건	
	①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체, 신용관리 대상자, 개인회생,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등 제외 ☞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. ② 개인 (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) ③ 연령 제한 : 민법상 성년(만19세 이상) ④ 동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⑤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⑥ 증권계좌에 대해 질권설정 신청한 고객 ⑦ 증권계좌 내 "대우큐스탁론 보유불가종목"이 없는 고객 ☞ 보유불가종목 보유시 매도 또는 타 증권계좌로 이체 후 약정신청 가능 ⑧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가 아닌 개인	
	■질권설정방식	
	▶신청방법 : 고객이 당행 대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(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사용)	
	■ 대출조건 (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약정서 참조)	
	*대출기준금리 : 연 6.9% *금리 적용은 대출시점 또는 만기연장시점 당행에서 정하는 스탭론 금리 별도적용 가능 ①대출기간 : 6개월 (연장가능, 최대 5년) ②연체금리 :약정이자 + 3% ③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 ④대출한도 : 담보평가금액별 차등 적용	
담보평가금액		대출한도

	<table> <tr> 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</td>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</td><td>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</td>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<td>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</td></tr> </table>	5천만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	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	1억원 초과	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
5천만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						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						
1억원 초과	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						
대출한도 금액설정	■ 최대 대출한도금액 내에서 고객이 직접 설정함. ☞ 개인별 주식매입자금대출 합계금액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함. ■ 최대 대출한도설정금액 내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일부상환과 추가대출이 가능함. ① 대출한도 설정금액 내 추가대출 가능금액 $= (\text{계좌평가금액} - \text{추가대출 전 대출잔액}) \times \text{대출한도(비율)} - \text{추가대출 전 대출잔액}$ ② 보유불가종목 보유시 대출 불가 ③ 추가대출시 계좌평가금액은 매수불가종목을 제외하고 평가되므로 HTS에서 보여지는 담보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④ 대출금 상환시에 최소금액(1,000원 이상)을 유지하셔야 대출한도가 유지되오니, 대출한도를 유지하고자 하실 경우 최소 대출금액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
대출한도 증액/감액	■ 대출한도 설정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신규약정 체결조건 ① ~ ⑧항을 충족하는 고객 ② 대출한도 증액가능금액 산정방식 $= (\text{계좌평가금액} - \text{대출잔액}) \times \text{대출한도(비율)} - \text{증액 전 대출한도설정금액}$ ☞ 계좌평가금액 = 총 계좌평가금액 - 매수불가종목 평가액 ③대출금리 : 최초 대출금리와 동일 (단, 만기 연장시 연장시점의 대출기준금리 적용) ④대출기간 : 최초 대출 만기일자와 동일 ⑤기타조건 : 연체금리, 중도상환수수료,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조건과 동일						
연장	■연장신청 :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포털 홈페이지 이용 ("스탁론관리">"연장신청" 화면) ■연장조건 : 하기 연장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, 자동연장 처리됨. ①신규약정체결조건 ① ~ ⑥항해당 고객 ②약정만기일(D일 15:30) ~ D-5일(영업일기준) 사이에 온라인 연장 신청한 고객 ③증권계좌 담보비율 122%이상인 고객 ④증권계좌 내에, 만기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 ■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, 익일 만기일 처리 (만기일에 따라 이자납입일 변경됨) ■당월이자 전액출금 방식 : 인출금액 부족시 미인출됨. ■ 연장이자율은 만기연장일 당일 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대출기준금리에 따름. ■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(이자연체, 신용조건 미달, 연락두절 등)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해당계좌에 대한 신규매수 및 인출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. ■ 연장 시 대출조건(이자율 등)은 당행의 사정,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					
해지	■ 해지 사유 ①약정만기일 도래 : 연장 미신청 또는 연장신청이 부결된 경우 ②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(자금의 사용)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☞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 ④담보비율 120%이하로 인한 자동 로스컷된 경우 ■ 대출해지 및 원금상환과 동시에 대우큐스탁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 질권설정 자동해지 ■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을 희망할 경우, 질권 재설정 후 신청 ■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(㈜씽크풀(위험관리시스템 제공업체)이 이를 대위변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(㈜씽크풀은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						

기타	■ 고객은 스타론 계좌운용을 위한 중요정보(담보비율, 반대매매 안내, 이자연체, 만기연장, 변경사항 안내 등)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, 항상 최신의 연락처 정보(휴대폰번호 필수)를 금융기관(여신기관 및 증권사)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 ① 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, 고객이 저축은행에 최종으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(SMS, MMS, LMS 등)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. ②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(이자연체, 반대매매발생 등)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,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행과 증권사 모두 연락처 변경하여야 합니다. ③ 금융기관에 담보물관리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, 대출, 연장, 주식신규매수, 인출거래가 제한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바랍니다. ④ 휴대폰, 통신사 스팸등록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 문자수신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스팸등록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중요 안내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 책임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---	---